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제정일: 2021년 2월 2일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제정이유]

일자리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제81조와 제185조 b호에서 정한 바를 시행하기 위함.

[관계법령]

1. 1945년 헌법 제5조 제(2)항
2. 노동에 관한 2003년 제13호 법률
3. 일자리창출에 관한 2020년 제11호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설명

1. 외국인력(TKA)이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위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2. 외국인력 고용주(Pemberi kerja TKA)란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기타 형태의 단체로서 급여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3. 외국인력의 동반근로자(Tenaga Kerja Pendamping TKA)란 기술과 전문성을 전수받기 위해 외국인력의 동반자로 지정된 인도네시아국적의 인력을 말한다.
4. 외국인력사용계획(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RPTKA)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직책에 외국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계획이다.
5.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이란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및 지명된 공무원이 인정한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6.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 KEK)이란 인도네시아공화국(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의 법적 영토(wilayah hukum) 내 특정 구획으로 정해진 지역(kawasan dengan batas tertentu)으로 특정 혜택을 부여받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ana Kompetensi Penggunaan TKA)이란 외국인력 고용주(고용기업)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보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금으로 이는 비조세국가수입 또는 지방수입이 된다.
8. 근로감독관(Pengawas Ketenagakerjaan)이란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완전한 형태로 임무, 책임,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아 근로감독 시스템의 지도, 감독, 평가, 조사 및 개발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장관(Menteri)이란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을 의미한다.

제2장 외국인력 고용주(Pemberi kerja TKA)의 의무와 금지사항

1부 일반

제2조

- (1) 모든 외국인력 고용주는 마련된 모든 직책(jabatan)에 인도네시아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2) 제(1)항의 직책에 인도네시아 인력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외국인력 사용은 국내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3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아래를 포함한다.
 - a. 정부기관, 외국대표부, 국제단체
 - b. 외국 무역대표부,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지사), 외국 통신사 등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단체
 - c.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민간기업
 - d. 인도네시아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PT) 또는 재단,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등재된 외국계 회사
 - e. 사회, 종교, 교육, 문화 기관
 - f. 기획사(usaha jasa impresariat)
 - g. 법률규정에서 외국인력 사용이 허용되는 법인
- (2) 제(1)항 d호의 주식회사(PT)는 개인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¹⁾의 경우 제외된다.

제4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력은 고용되는 직책에 부합하는 역량(kompetensi)을 갖춘 자여야 한다.
- (2) 제(1)항에서 의미하는 외국인력에게 허용되는 특정 직책은 장관이 관련 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제5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다른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력을 아래 동일한 직책에 고용할 수 있다.
 - a. 이사 또는 감사, 또는
 - b. 직업교육(pendidikan vokasi) 및 직업훈련(pelatihan vokasi) 분야, 디지

1) perseroan terbatas yang berbentuk badan hukum perorangan

텔 경제 분야 및 협력계약의 계약자인 경우 석유·가스 분야

- (2) 제(1)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1)항의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 해당 외국인력은 반드시 첫 번째 외국인력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의 외국인력의 최대 고용기간은 첫 번째 외국인력 고용주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에 기재된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이다.
- (4) 제(1)항 b호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디지털 경제 분야 및 협력계약의 계약자인 경우 석유·가스 분야에서 중복이 허용되는 특정 직책은 장관이 관련 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2부 의무사항

제6조

- (1) 모든 외국인력 고용주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이 승인한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
- (2) 외국인력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 각각의 고용주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의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에 맞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제7조

- (1) 외국인력 고용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 a. 외국인력으로부터 기술전수(alih teknologi) 및 전문성전수(alih keahlian)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국적의 인력을 고용된 외국인력의 동반근로자(Tenaga Kerja Pendamping TKA)로 지정한다.
 - b. a호의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게 외국인력이 보한 직책의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c. 계약 종료후 외국인력을 본국으로 귀국시킨다.²⁾
- (2) 제(1)항의 의무사항외에도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3) 제(1)항 a호, b호와 제(2)항의 규정은 아래 대상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2) memulangkan TKA ke negara asalnya setelah perjanjian kerjanya berakhir.

- a. 이사진 및 감사
- b. 대표사무소장 (지사장)
- c. 설립인(pembina), 운영인(pengurus), 재단 감독인(pengawas yayasan) 및
- d. 일시적인 성격의 업무에 고용된 외국인력

제8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6(육)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력에게 국가보장프로그램을 또는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력에게 보험사의 보험프로그램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보험프로그램에는 최소한 산업재해 위험 종류(jenis risiko kecelakaan kerja)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3부 금지사항

제9조

개인인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³⁾

제10조

외국인력 고용주는 동일한 회사내에서 중복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겸직금지).

제11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인사노무(personalia)를 담당하는 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 (2) 제(1)항의 인사노무(personalia)를 담당하는 직책은 장관이 관련 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제3장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1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신청방법

제12조

3) Pemberi kerja orang perorangan dilarang mempekerjakan TKA.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받기 위해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의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출하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시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외국인력 고용주의 신원정보
 - b. 외국인력 사용 이유
 - c. 회사 조직내 외국인력의 직책 또는 지위
 - d. 외국인력의 수
 - e. 외국인력 사용기간
 - f. 외국인력 근무지
 - g.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의 신원정보 및
 - h. 매년 인도네시아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⁴⁾
- (3)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2)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을 할 때 최소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 a. 신청서
 - b. 외국인력 고용주의 사업허가 및/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nomor induk berusaha)
 - c.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설립 승인결정(서)와 증서 및/또는 개정본⁵⁾
 - d. 회사의 노동신고의무 증거
 - e. 근로계약서(초안) 또는 기타 계약서(초안)
 - f. 회사 조직도
 - g. 외국인력 동반근로자 지정 사실확인서
 - h. 외국인력이 보한 직위의 자격요건에 맞는 인도네시아인력에게 업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확인서
 - i.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확인서
- (4)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가 준비되어있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 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시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4) rencana penyerapan tenaga kerja Indonesia setiap tahun

5) akta dan keputusan pengesahan pendirian dan/atau perubahan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 (1) 외국인력 고용주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출한 날로부터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2) 제(1)항의 장관 또는 공무원은 적정성 평가를 근거로 외국인력 고용주의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날로부터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2(이)일 내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급한다.

제14조

- (1) 제13조 제(2)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외국인력 고용주는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2) 제(1)항의 예비 외국인력의 정보는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a. 외국인력의 인적사항
 - b. 외국인력의 직책 및 외국인력의 근무기간
 - c. 외국인력 근무지 및
 - d. 외국인력 거주지 및 코드 결정(penetapan kode)
- (3) 외국인력 고용주는 제(2)항의 예비 외국인력의 정보를 제출할때 최소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다.
 - a. 졸업장
 - b. 근로경력 또는 자격증명서(sertifikat kompetensi)
 - c.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 d. 외국인력 동반근로자 지정 확인서
 - e. 외국인력 보증인으로서의 사실확인서⁶⁾
 - f. 외국인력 또는 외국인력 고용주 소유의 계좌/입출금명세서⁷⁾
- (4)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와 서류는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2(이)일내 확인(verifikasi)한다.
- (5) 제(4)항의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와 서류가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외국인력 고용주가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의 납부를 완료하면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발급한다.
- (6)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외국인력이 근무목적으로 체류허가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권고/추천(서)(rekomenadasi)으로서 활용된

6)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7)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i Kerja TKA

다.

- (7) 제(5)항의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근무목적의 체류허가와 비자 발급을 위한 권고/추천(서)(rekomendasi)으로서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법무인권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제15조

- (1) 정부기관, 외국공관, 국제단체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시 제13조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된다.
- (2)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은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최소한 아래의 예비 외국인력의 정보를 포함한다.
 - a. 외국인력의 인적사항
 - b. 외국인력의 직책 및 외국인력의 근무기간
 - c. 외국인력의 근무지 그리고
 - d. 외국인력의 거주지 및 코드 결정
- (3) 외국인력 고용주는 제(2)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서를 최소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a. 신청서와 외국인력 사용이유
 - b. 근로계약서(안) 또는 기타 계약서(안); 및/또는
 - c.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서
- (4)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2(이)일내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 및 서류를 확인한다.
- (5) 제(4)항의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와 서류가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발급한다.
- (6)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외국인력이 근무목적의 체류허가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권고/추천(서)(rekomendasi)으로서 활용된다.
- (7) 제(5)항의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근무목적의 체류허가와 비자의 발급을 위한 권고/추천(서)(rekomendasi)으로서 법무인권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16조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종류는 아래로 구성된다.

- a. 일시적인 성격의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
- b. 6(육)개월 이상의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
- c.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
- d. 특별경제구역(KEK)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

제17조

- (1) 일시적인 성격의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유효기간이 최대 6(육)개월까지 발급되며 연장이 불가하다.
- (2) 6(육)개월을 초과하는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과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최대 2(이)년까지 발급되며 연장이 가능하다.
- (3) 특별경제구역(KEK)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기간은 최대 5(오)년까지 발급되며 연장이 가능하다.
- (4) 이사진 또는 감사 직책을 위한 특별경제구역(KEK)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1회만 발급되며 해당 외국인력이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유효하다.

제18조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정부기관, 외국공관, 국제단체, 사회기관, 종교기관 및 교육기관의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특정 직책에 대해 제공된다.

제19조

- (1) 제16조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아래 대상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 a.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주주 또는 일정 주식을 보유한 이사진 또는 감사
 - b.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직 공무원 및 영사, 또는
 - c. 비상사태로 중단된 생산, 직업훈련,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 비즈니스 출장 그리고 일정기간의 연구 활동에서 외국인력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 (2) 외국인력 고용주는 제(1)항 c조의 일정기간의 직업훈련 및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 업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주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3) 제(2)항의 직업훈련과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내 직책은 장관이 관련 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 (4) 제(2)항의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근무목적의 체류허가와 비자 발급을 위한 권고/추천(서)(rekomendasi)으로서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를 법무인권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 (5) 외국인력이 제(3)항의 직업훈련 및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 업종에 근무하는 기간은 최대 3(삼)개월이다.
- (6) 제(5)조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 업종에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
- (7) 제(5)항의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외국인력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력을 지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을 해야 한다.
- (8) 제(7)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서)는 제(5)항의 외국인력의 근무기간이 종료하기전 최대 2(이)주안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0조

제19조 제(1)항 c호의 비상사태로 중단된 생산, 직업훈련,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start-up), 비즈니스 출장 그리고 연구 활동에서 외국인력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은 출입국 분야의 관련법규에 따라 체류허가와 비자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 영토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2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연장과 변경

제21조

- (1) 외국인력 고용주가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연장을 신청한다.
- (2)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연장 신청은 기간

- 이 종료하기전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30(삼십일)전에 신청한다.
- (3) 제(1)항의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출하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연장 신청시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a. 외국인력 고용주의 신원정보
 - b.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연장 사유
 - c. 회사 조직내 외국인력의 직책 또는 지위
 - d. 외국인력의 수
 - e. 외국인력 사용기간
 - f. 외국인력 근무지
 - g.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의 신원정보 및
 - h. 인도네시아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실현 현황⁸⁾
- (4)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3)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연장 신청을 할 때 최소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 a.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연장 신청서
 - b.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 c.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 d.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력 여권
 - e.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현황)⁹⁾
 - f. 외국인력과 외국인력 고용주의 납세자번호(NPWP), 그리고
 - g. 외국인력이 보한 직책의 자격요건에 맞게 인도네시아인력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고서
- (5)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연장 신청이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2(이)일내 연장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perpanjangan)을 발급한다.
- (6) 제(5)항의 연장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유효기간은 최장 2(이)년이고 연장된 특별경제구역(KEK)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5(오)년이다.
- (7) 연장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은 외국인력이 근무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권고/추천(rekomendasi)으로서 활용된다.
- (8) 제(5)항의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고용될 외국인력 자료를 법무인권

8) realisasi penyerapan tenaga kerja Indonesia

9)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22조

- (1) 아래의 변경 내역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주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a. 외국인력 고용주 주소
 - b. 외국인력 인적사항
 - c. 외국인력 근무지 및/또는
 - d. 고용된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의 이름
- (2)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변경은 신청이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근무일(평일) 기준 최대 2(이)일내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이 발급한다.

3부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

제23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력에 대해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 영토내 근무하는 기간에 맞게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을 납부한다.
- (3) 외국인력 고용주는 장관 또는 지명 공무원으로부터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납부 코드(kode billing pembayaran)를 받아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을 납부한다.
- (4) 제(3)항의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의 납부 코드(kode billing pembayaran)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이 예비 외국인력의 자료와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된 것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부여된다.
- (5)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의 납부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에 필요한 요건이다.
- (6)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의 규모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규정에 부합하게 실시된다.

제24조

- (1) 외국인력 고용주가 납부한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은 비조세국가 수입 또는 지방보상금¹⁰⁾ 형태의 지방수입이다.
- (2)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은
 - a. 신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1(한)개 주(州)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연장 그리고 특별경제구역(KEK)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의 경우 비조세국가수입
 - b. 1(한)개 주(州)내 1(한)개 군(郡)/시(市)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연장의 경우 주(州) 지방수입
 - c. 1(한)개 군/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연장의 경우 군/시 지방수입
- (3) 제(1)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비조세국가수입인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은 지방정부가 지정한 은행을 통해 납부한다.

제25조

- (1)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의 납부 의무는 아래 대상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 a. 정부기관
 - b. 외국공관
 - c. 국제단체
 - d. 사회기관
 - e. 종교기관 및
 - f. 교육기관의 특정 직책
- (2)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이 면제되는 제(1)항 f호의 교육기관의 특정 직책은 장관이 교육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제26조

제12조~제25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RPTKA Pengesahan)의 신청, 연장, 변경 및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납부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4장

10) retribusi daerah. “retribusi”는 지방세의 일종임.

외국인력 체류허가

제27조

- (1) 인도네시아내 외국인력 고용주가 고용하는 모든 외국인력은 체류허가를 보유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체류허가의 종류와 부여방법은 출입국 분야의 법규에 의거한다.

제5장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

제28조

- (1) 기술과 전문성 전수를 위해 인도네시아인력을 외국인력의 동반근로자로서 지정한다.
- (2) 제(1)항에서 의미하는 기술과 전문성은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 및/또는 훈련을 통해 전수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반근로자가) 외국인력이 활용하는 기술을 업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 (1)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은 국내 및/또는 국외에서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업무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인력 동반근로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 교육과 훈련 수수료증(sertifikat) 및/또는 자격증명서(sertifikat kompetensi)를 수령한다.
- (3) 제(1)항에서 의미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은 관련법규에 의거한다.

제30조

외국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은 외국인력 고용주가 실시하거나 인도네시아어 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제28조~제30조에서 의미하는 외국인력과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고, 지도 및 감독

1부 보고

제32조

- (1) 외국인력 고용주는 매 1(일)년 마다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아래의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 a. 외국인력 사용
 - b.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
 - c.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외국인력의 기술 전수와 전문성 전수
- (2) 외국인력 고용주는 일시적인 성격(bersifat sementara)의 업무에 외국인력을 사용할 시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제(1)항 a호의 외국인력 사용실시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 (3) 외국인력 고용주는 외국인력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했거나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종료되었음을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33조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외국인력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력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외국인력의 근무지에 부합하게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주(州) 및 군/시 노동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청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부 지도

제34조

외국인력 사용 지도는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와 주 및 군/시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청에서 그 권한에 맞게 실시한다.

3부 감독

제35조

- (1) 외국인력 사용 감독의 실시자는 아래와 같다.
 - a.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처 및/또는 주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청의 근로감독관, 및/또는
 - b. 출입국 조치 및 감독 분야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이 각각의 권한과 임무 범위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2) 제(1)항 a호의 근로감독관은 노동 분야의 법률규정에 맞는 외국인력 사용 규범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7장 행정제재

제36조

- (1)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2)항, 및/또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아래와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 a. 벌금
 - b.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절차 일시 중지 및/또는
 - c.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취소
- (2)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이 제(1)항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 (3) 제(2)항의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의 행정제재 부과 통지서¹¹⁾를 근거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제37조

- (1)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9조 제(6)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보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제36조 제(1)항 a호의 벌금이 부과된다.
- (2) 제(1)항의 벌금규모는 직책당, 인당, 개월당 부과되며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a. 1(일)개월은 Rp.6,000,000.00(육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b. 2(이)개월은 Rp.12,000,000.00(천이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c. 3(삼)개월은 Rp.18,000,000.00(천팔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d. 4(사)개월은 Rp.24,000,000.00(이천사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11) surat pemberitahuan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 e. 5(오)개월은 Rp.30,000,000.00(삼천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f. 6(육)개월은 Rp.36,000,000.00(삼천육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3) 제(2)항의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규모는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날로부터 6(육)개월까지 계산한다.
- (4) 제(2)항의 벌금은 국고로 납부된다.
- (5) 제(2)항의 벌금의 납부기한은 외국인력 고용주가 벌금부과 통지를 받거나 수령한날로부터 최대 2(이)주이다.

제38조

- (1) 제37조 제(5)항의 벌금을 최대 2(이)주내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절차의 임시 중지 제재가 부과된다.
- (2) 제(1)항의 외국인력 고용주가 벌금과 벌금총액의 월 2%(이퍼센트)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지속 유효하다.
- (3) 제(2)항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최대 6(육)개월간 부과된다.
- (4) 외국인력 고용주가 납부기한이후 6(육)개월내 벌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후속 절차를 위해 국가에 대한 채무(piutang)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청구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

제39조

- (1) 아래의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제36조 제(1)항 b호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신청절차 일시 중지 제재를 부과한다.
 - a. 제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않음.
 - b. 제8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6(육)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력은 국가 보장프로그램에, 또는 6(육)개월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력은 보험사의 보험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음.
 - c. 제3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 1(일)년 마다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외국인력 사용의 실시,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외국인력의 기술과 전문성 전수의 실시에 대해 보고하지 않음.
 - d. 제32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일시적인 성격의 업무에 외국인력을 사용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외국인력 사용실시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지 않음. 그리고/또는,

- e. 제32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력 고용주가 외국인력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했거나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종료되었음을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음.
- (2) 제(1)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신청절차 일시 중지 제재는 최대 3(삼)개월간 부과된다.
- (3) 제(2)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절차 일시 중지 제재시 외국인력 고용주는 이미 위반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4) 외국인력 고용주가 제(3)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취소 제재가 부과된다.

제40조

- (1) 아래의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제36조 제(1)항 c호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취소 제재가 부과된다.
 - a. 제6조 제(3)항의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함.
 - b. 제10조의 동일한 회사내에서 중복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함(겸직).
 - c. 제11조 제(1)항의 인사노무(personalia)를 담당하는 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함. 그리고/또는
 - d. 제23조 제(1)항의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력에 대해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을 납부하지 않음.

제41조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법무인권 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장관 또는 지명된 공무원에게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의 취소를 전달하여 출입국 분야의 법규에 부합하는 출입국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

제36조~제41조에서 의미하는 행정제재 부과방법에 관한 세칙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재원

제43조

본 정부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예산(APBN), 주(州) 지방정부예산(APBNP), 그리고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기타 합법적인 재원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44조

본 정부령에서 정하는 외국인력 사용절차는 온라인으로 통합되고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사용 방식을 통해 실시된다.

제10장 경과규정

제45조

본 정부령이 발효될 시

- a. 이미 발급된 외국인력 사용허가(perizinan penggunaan TKA)는 그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유효하다. 그리고
- b. 현재 신청절차 중에 있는 외국인력 사용허가는 본 정부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종결규정

제46조

본 정부령이 발효될 시,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18년 제20호 대통령령 (관보 2018년 제39호)는 폐지되며 효력을 상실한다.

제47조

본 정부령이 발효될 시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의 연장으로 기인하는 보상금(retribusi)에 관해 다루고 있는 지방령(Peraturan Daerah)과 지방자치단체장령(Peraturan Kepala Daerah)는 본 정부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3(삼)개월내에 본 장관령의 규정에 맞게 조정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본 정부령은 2021년 4월 1일부로 발효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본 정부령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2021년 2월 2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2021년 2월 2일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해설

I. 개요

투자(investasi)란 국가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자,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인력을 위한 일차리 창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인력이란 개발의 목표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갖는다. 모든 개발 활동은 필요한 직책에 인도네시아인력을 배치시키고 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인력의 질적 향상과 역할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인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가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로 인해 외국인력의 사용이 필요할 시, 이는 외국인력이 동반근로자에게 기술과 전문성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국가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본 정부령은 외국인력이 보임할 수 있는 특정 직책과 특정 기간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요건과 제한 사항을 정하고 선별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여 국가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다.

외국인력의 사용은 의무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을 통해 실시된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주가 외국인력을 사용할 시 의무사항은 인도네시아국적의 인력을 외국인력의 동반근로자로 지정하여 외국인력으로부터 기술과 전문성을 전수받게 할 것, 외국인력이 보임한 직책의 자격요건에 맞게 인도네시아인력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후 외국인력을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 등이 있다.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지도와 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며 인도네시아인력에게 최대한 폭넓은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사용 규범을 위반한 외국인력 고용주에게 행정적 제재와 법적 정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본 정부령은 외국인력 고용주의 의무와 금지사항,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Pengesahan RPTKA) 신청, 연장과 변경, 외국인력사용보상기금(DKPTKA) 규정, 외국인력 체류허가 발급,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 대한 업무 교육과 훈련 실시, 외국인력에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 보고, 지도 및 감독, 그리고 외

국인력 사용 규범 위반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II. 조(Pasal) 해설

제1조 명확함

제2조 명확함

제3조

(1)항 a호 “국제단체”에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e호 명확함

f호 명확함

g호 “법률 규정에서 외국인력 사용이 허용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변호사 사무실 및 공인 회계사 사무실 등을 말한다.

(2)항 명확함

제4조

(1)항 “특정 직책”이란 감사, 이사, 경영 및 전문적인 수준의 직책 등을 말한다.

(2)항 명확함

제5조 명확함

제6조 명확함

제7조 명확함

제8조 명확함

제9조 명확함

제10조 명확함

제11조 명확함

제12조

(1)항 명확함

(2)항 a호 “외국인력 고용주의 신원정보”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력 고용주의 업종/분야 등을 말한다.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e호 명확함

f호 명확함

g호 명확함

h호 명확함

(3)항 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e호 “기타 계약서”란 용역계약서, 본사가 발급한 임명장/발령장 (surat penunjukan penugasan) 및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f호 명확함

g호 명확함

h호 명확함

i호 명확함.

(4)항 명확함

제13조

(1)항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적정성 평가”란 외국인력사용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가경제 고용시장 현황과 고용창출 잠재력을 고려하고 예비 외국인력이 보임할 수 있는 특정 직책과 특정 기간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요건과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2)항 명확함

제14조

(1)항 명확함

(2)항 a호 “외국인력 인적사항 “이란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성별, 교육수준, 혼인여부,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장소 및 발급일 등을 말한다.

b호 명확함

c호 명확함

d호 명확함

(3)항 명확함

(4)항 명확함

(5)항 명확함

(6)항 명확함

(7)항 명확함

제15조

(1)항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a호 명확함

b호 명확함

c호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서”란 외교 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와 국가사무 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의 임명동의서(surat persetujuan penugasan) 등과 같은 서류를 말한다.

(4)항 명확함

(5)항 명확함

(6)항 명확함

(7)항 명확함

제16조 명확함

제17조

(1)항 “일시적인 성격의 업무”의 예는 아래와 같다.

a.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득한 상업 영화 제작

- b. 1(일)개월 이상 소요되는 감사(audit) 실시, 생산 품질 관리, 인도네시아내 지사에 대한 점검(inspeksi)
 - c. 기계, 전기 설치 관련, 판매후 애프터서비스 또는 사업준비기간 (masa penajakan usaha)내 상품과 관련된 업무
 - d. 기획사 업무 또는
 - e. 1회성으로 종료되는 업무 또는 6(육)개월 미만의 업무
- (2)항 명확함
 - (3)항 명확함
 - (4)항 명확함

제18조 명확함

제19조

- (1)항 a호 “법률 규정” 이란 투자혜택(fasilitas penanaman modal)에 관해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b호 명확함

- c호 “비상사태로 중단된 생산” 이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기업 및/또는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연 재해, 주요 기계 결함, 폭동/시위/소요 등과 같이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말한다.

“직업훈련” 이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말한다.

“기술기반 벤처기업(start-up)” 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디지털 및 테크 스타트업과 같은 특정 자본을 가진 기업이다.

“비즈니스 출장” 이란 비즈니스 상담, 강연 또는 세미나 참석, 국제 박람회 참가, 본사 또는 인도네시아내 지사가 개최하는 회의 참석 등을 의미한다.

“훈련” 이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2)항 명확함
- (3)항 명확함
- (4)항 명확함
- (5)항 명확함
- (6)항 명확함
- (7)항 명확함

(8)항 명확함

제20조

“비상사태로 중단된 생산”이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기업 및/또는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 주요 기계 결함, 폭동/시위/소요 등과 같이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말한다.

“비즈니스 출장”이란 비즈니스 상담, 강연 또는 세미나 참석, 국제 박람회 참가, 본사 또는 인도네시아내 지사가 개최하는 회의 참석 등을 의미한다.

“훈련”이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1조 명확함

제22조 명확함

제23조

(1)항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명확함

(4)항 명확함

(5)항 명확함

(6)항 “법률규정”이란 노동 분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적용되는 비조세국가수입 요율과 종류에 관해 정하는 법률규정을 말한다.

제24조 명확함

제25조 명확함

제26조 명확함

제27조 명확함

제28조 명확함

제29조

(1)항 명확함

(2)항 명확함

(3)항 “법률규정”이란 국가직업훈련시스템과 국가교육시스템에 관한 법률규정을 말한다.

제30조 명확함

제31조 명확함

제32조 명확함

제33조 명확함

제34조 명확함

제35조 명확함

제36조 명확함

제37조 명확함

제38조 명확함

제39조 명확함

제40조 명확함

제41조 명확함

제42조 명확함

제43조 명확함

제44조 “온라인으로 통합되고”란 출입국 시스템, 재무 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의 시스템, 사회보장시행청 시스템, 전자방식으로 통합된 사업허가 시스템 등과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45조 명확함

제46조 명확함

제47조 명확함

제48조 명확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6646호